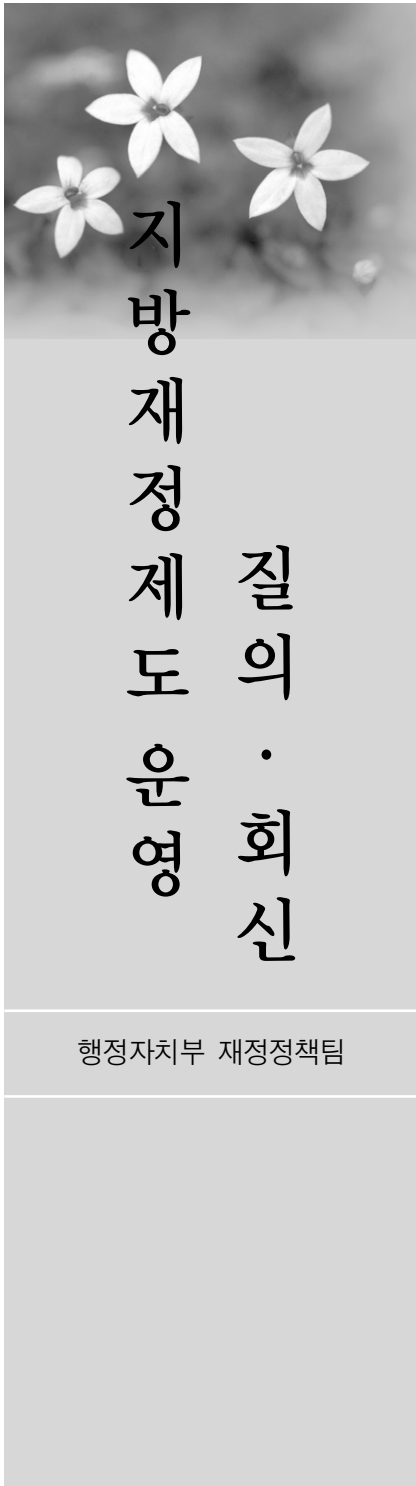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1. 대형공사의 용어정의 관련 질의

[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 조경공사업 등과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대형공사의 금액 산정시 분리발주하는 공사의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하는 바,
- 여러 법령에 의거 수개의 업종이 포함되고 일부 업종을 분리발주하는 경우 분리발주하는 업종의 공사금액은 대형공사의 금액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채권가압류 효력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한 계속비공사에 있어 원도급사(A사)가 B사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거 채권양도 및 하도급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계약을 한 경우, ①B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A사를 채무자로 채권가압류 등이 채권양도 후 접수된 경우 효력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한 시설공사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50조제1항의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채권양도 후 동 공사금액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민사법 관련 사항으로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사항입니다.

3.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소액공사를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의 범위는『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 IV-1-(2)-가-②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이나 광역시의 전 자치구내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공사정지기간 산정방법관련 질의

〈질의〉

- 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적용시점에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 정지기간 산정방법 및 제1, 2차 계약체결 및 준공완료 후 제3차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휴지기간이 발생한 경우 당해 기간이 정지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공사정지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舊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제1, 2차 계약체결 및 준공완료 후 제3차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휴지기간이 발생한 경우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소액수의계약 계약체결 방법관련 질의

〈질 의〉

- 소액인 수익자부담 경비로 운영하는 학생들의 우유급식과 학교 수련활동 등 교외활동 시 수련·숙박시설 업체선정을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 Ⅵ의 규정에 의거 ㉠ 음식물(재료구입 포함)의 구입, 농·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와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계약담당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6.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등 관련 질의

〈질 의〉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체 및 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상대자 선정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구매입찰의 경우, 3개 품목을 각각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각각 선정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계약

에 있어 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② 공고조건을 충족되지 않는 자가 한 입찰의 입찰무효 해당여부, ③ 일부 품목은 입찰참가자격인 있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로 결정된 경우 계약가능여부 및 향후 계약집행방법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인 입찰에 있어 제한경쟁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으로 제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 제 3자단가 계약 품목 및 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물품구매 또는 제조구매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이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 되는 것 이며 이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은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지식기반사업이외의 사업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배점한도 및 심사항목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 제186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기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기준이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기반사업이외의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식기반사업이외의 물품 및 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 제186호)과 다르게 당해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질의〉**

- 2001년 00사에서 입찰공고하여 2002년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지하철건설공사(Turn-Key공사, 3조2천억원)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바,
- 국민연금법(86제정)과 국민건강보험법(99제정)이 건설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계약시 별도 보험료를 명기하지 않았으며, 2003.6.27. 동 법령이 개정되어 대상근로자가 변경되고, 2003.12.26.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동 보험료를 규정하였으며, 2004.3.8. 조달청에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여 비율을 명시하였는데, 계약체결후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의 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재정부 회계예규와 조달청 기준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등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인 조달청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9. 지체상금부과 관련 질의

〈질의〉

-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개설공사 시행중 발주부서가 동절기 공사일시정지를 지시하면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책임감리원에게 공사 일시정지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제외한 보조감리원의 투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감리회사가 공사 일시정지 기간동안 용역일시정지로 간주하고 3차용역 준공일까지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 용역명 : ○○~○○간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3차)
- 계약기간 : 2003.4.1.~2006.7.20. (3차 : 2005.2.1.~2005.12.31.)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시설공사의 일시정지는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안전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나, 기술용역의 일시정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일시정지를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 일시정지 및 해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 및 용역등을 함께 일시정지·해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일시정지로 인하여 당해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 의〉

- 국가계약법령 적용 시점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터파기 도중 암이 발생된 경우와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부 공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19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 계약담당자가 설계도서, 현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

항입니다.

11. 실적인정 관련 질의

〈질의〉

-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의 실적인정에 있어 과거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실적의 경우 최종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기성 실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별표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거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 인정하여야 합니다.

12.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

- 국가계약법령 적용 시점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내역서상 일부 자재(사석)의 단가가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대상 관련 질의**〈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도급계약 방식중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용대상은『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9호) I.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 나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7개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한하며,
 -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써 통합발주하는 경우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4. 다른 법령의 적용범위 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상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 이외에 다른 법령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령의 적용 범위

〈회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계약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15. 수의계약 가능여부 관련 질의

〈질의〉

- 00시가 가설하는 00교와 00청이 가설하는 00대교는 분리교량이지만 동일현장에서 2개 시공사가 각각 시공시 상호근접(00대교와 00교의 교각상부는 0.5m, 교각기초는 5m정도 간격임)하기 때문에 동일 물막이 내부에서 동일 가도를 이용해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실정임으로 각각의 장비 운용에 따른 부대시설비 증가 및 가도축도, 가교공 이 중설치 등 경비의 과다소요와 공기 조절 어려움등 시간적 공간적 혼잡성으로 인한 중복시공으로 시공마찰이 우려되며 1개 시공사가 시공하면 공사의 시공관리상 안전성이 증대됨은 물론 00대교 경쟁입찰시 적용된 낙찰율(72.99%)에 따른 우리시의 예산절감(수의계약시 46억정도 절감)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나목(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



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사업구역은 동일지점이나 각각 다른 구조물로서 구조물에 대한 책임구분이 명확하고 총사업비가 227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으로 00청을 배제하고 현 00대교 시공업체인 (주)00건설과의 수의계약은 향후 각종 감사 및 대다수 발주를 기다리는 건설업체의 항의와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개경쟁입찰 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자부 예규 제187호)」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동 요령의 수의계약요건(종합평점 95점 이상)에 해당 되는지와 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6. 동일한 실적 인정여부 관련 질의

〈질의〉

- 입찰공고시 실적을 도로시설공사 L= 2.5km, B= 25m 이상으로 제한하였을 때 A시에 서 발급한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급(도로시설공사 L= 2.68km, B= 25m) 되었으나 후에, 실측 또는 공부상 재확인을 통하여 시공실적이 일부 변경(도로시설공사 L= 2.51km, B= 25m)되었다면 이를 허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지 여부

〈회신〉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는「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별 표1-1〉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회계·계약서류, 공사대장 등 각종 공부와 준공조서를 기초로 고의성이 있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7.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평가 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3항에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와 관련하여 주4)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형의 확정일이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별표4〉의 주4)에서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6.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에서 형의 확정일이란 형사관련 법령에 따른 형의 확정일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일자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국내여비 및 설계변경관련 질의

〈질 의〉

- 질의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제25조(경비) 1항 나목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소재지가 00군의 경우 00군을 시내로 적용하는지 또는 시외로 적용하는지
- 질의 2) 문화재청에서 조사기간이 25일로 발굴허가 되었으며 과업지시에도 60일로 조사토록 지시 하였던 바,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본 시굴조사에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25일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국내여비를 전액 감액 설계 변경해야 되는 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경비항목 중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에 준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바, 시외여비는 근무지내 출장(동일시·군 및 도서관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제외하고는 국내출장 여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 및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 지체상금 공제 관련 질의

〈질의〉

○ 현황

가. 계약건명 :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계약상대자 : 건축사사무소○○ ○○○

다. 계약금액 : 252,700,000원

라. 계약기간 : 2005.08.03 - 2005.11.30(120일간)

마. 지체상금율 : 매1일당 0.25%

바. 과업내용 : ○ 기본 및 실시설계(지반조사 포함)

○ 기본설계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실시설계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사. 계약이행 : 계약체결 후 용역 이행에 착수하여 2005.09.20일 기본설계도서를 정상 납품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용역 이행 중 2005.11.10일 기성금을 청구하여 기본설계부분에 대한 기성금(공정률 38.52%, 97,340천원) 수령 후, 용역완료예정일을 27일 지체하여 2005.12.27일 완료된 설계도서를 납품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함

○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동조건 제22조에 의거 부과할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대상에 기성대가(기본설계) 지급액 공제 여부

〈회신〉

○ 지체상금은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징수하게 되므로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인수,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상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없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관급액 산정 및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관련 질의

〈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에정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6년도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 2005. 12. 27)내용에 2005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시공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를 대상업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의 취지인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한 조치임을 비추어볼 때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건의 공사에정금액을 관급액을 제외한 도급액으로 판단 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해야 되는지,
- 아니면, 공사에정금액이라 하면 조달용어 해석상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급액중 도급자설치 관급액을 입찰자가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건설산업기본법과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사실상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업체에 대해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법적으로 제재 가능 여부

〈회 신〉

-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령」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에정금액으로 한다”라

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동 법령상의 공사예정금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할 사항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해당 건설업체는 동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령상 도급하한액 관련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1. 입찰유무효 관련 질의

〈질의〉

- 00군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건설공사금액 하한적용)가 입찰에 참여하여 예비가격을 추첨하였을 경우에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입찰진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또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착오가 아닌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행자부 예규 제194호)」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당해 업체는 입찰무효가 되나 무자격자가 추첨에 의한 임의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였다하여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 의〉

- 행정자치부 예규 제187호「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 5백만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하는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학술연구용역은 결과 활용의 중요성과 학문적 전문성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는 가능한 지역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는바,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라도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